

1996 년도 지방토론회(광주편)

보도의 법적 · 윤리적 한계와 피해구제

한동원

중재위원 전 언론연구원 원장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적인 운용과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지난 11 월 8 일 광주에서 지역 언론계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의 인사를 초청, 지방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 한동원위원의 추계발표와 참석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다음은 주제발표 논문과 토론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편집자 주

1. 서 론

헌법 제 21 조는 언론·출판의 자유(1 항)와 함께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되며 이러한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4 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언론의 자유가 결코 다른 사람의 자유나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무제한으로 그리고 우월적으로 보장될 수 없음을 법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언론자유 의 가장 큰 명분은 「국민의 알 권리」에 있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한다는 공익목적의 한도내에서 최대한으로 보장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과연 어떤 것이며 그 정보를 입수하는 수단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 언론과 수용자간에는 그 기준을 둘러싸고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공성과 공익성이 없고 진실하지 않은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것은 국민의 호기심에 영합하기 위한 「정보공해」에 불과하며 만일 그러한 정보가 뉴스로 공표될 때에는 명예훼손, 프라이버시침해, 초상권침해 등 분쟁의 원인이 될 인권침해를 일으킬 뿐이다.

분쟁화되는 언론보도에 의한 인권침해 내용은 대부분 현행법과 신문윤리강령, 신문윤리실천요강 등에 명시되어 있는 금기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관성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언론인들은 취재관행, 보도관행이라는 이유를 내세우며 종처럼 그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이나 윤리에 반하는 취재관행 · 보도관행은 결코 합법화의 명분이 될 수 없으며 피해자와의 분쟁에서 법의 규제를 벗어날 수 없다.

'80년대 이후 특히 근래에 와서 내려지고 있는 법원의 판결이 「공익목적」과 「공공성」의 관문을 협의로 축소하고 진실의 증명에 있어서의 상당성의 판단기준을 높이는

등 언론침해에 대한 법적용을 엄하게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최근 일본의 법원판결도 이러한 경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언론침해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최근 일련의 판결경향으로 볼 때 지금까지 관용되고 묵인되어 왔던 언론인들의 역기능적인 취재관행, 보도관행은 이제 버리지 않을 수 없는 사회적인 환경을 맞고 있는 것 같다.

II. 보도의 법적 · 윤리적 한계

언론이 공표하는 보도내용의 한계는 기본법인 헌법을 비롯하여 여러 법률과 언론계 스스로 제정한 윤리강령, 윤리강령실천요강, 보도기준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어느 누구도 그의 프라이버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한 불법적인 간섭 또는 명예 및 신용에 대한 공격을 받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이 간섭 또는 공격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세계인권선언 제 12 조의 규정도 보도의 한계와 관련되는 내용이다.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 보도기준 등에 명시된 보도의 한계는 편의상법적인 한계규정과 차별화하여 윤리적 한계를 구분하고 있기는 하지만 법적인 한계규정과 동일한 내용이 많아 단순한 윤리차원의 보도한계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III. 언론침해와 중재제도

언론보도에 의해 침해 받은 피해자는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1차적으로 당해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도가 있는 후 6개월을 넘겨서는 안된다. 법 개정 (1995. 12. 30)전에는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되어 있었다"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추후보도의 내용은 청구인의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된다. 만일 언론사가 추후보도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분쟁의 중재를 중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IV.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제언

가. 불법적이고 반윤리적인 취재 · 보도관행은 판결례 등에서 보듯이 인권침해의 원인이 되고있다. ㉠ 공공성, 공익성이 없음에도 허락없이 남의 주거나 그 밖의 프라이버시 영역에 함부로 출입하는 경우 ㉡ 허락없이 남의 얼굴사진을 함부로 촬영하는 경우 ㉢ 형이 확정되기 전에 피의자,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는 경우 ㉣ 수사기관이나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인지했거나 비공식발표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입증자료나 확인없이 보도하는 경우 ㉤ 확인하지 않고 다른 매체의 기사나 다른 기자가 취재한 정보를 그대로 전재 또는

보도하여 오보를 내는 경우 ㉞ 그 밖에 판결례나 중재신청사례, 시정권고사례 등에서 보여주고 있는 역기능적인 관행들은 과거에는 피해자들의 인고(인고)와 관용, 법률지식의 결여 등으로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인들의 무관심속에 관성적으로 반복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고쳐나 가야 할 가장 큰 과제라고 하겠다.

나. 모든 취재와 보도의 기준을 공공성과 공익성과의 관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며 그래야만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봉사가 될 것이다.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보도한다는 명분은 「국민의 알 권리」와는 다르며 공공성과 공익성의 기준이 될 수도 없다.

다. 이해 당사자가 대립관계에 있는 사건, 고소·고발사건은 공공성과 관련이 있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기사화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사화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집필기자의 주관이나 논평없이 쌍방의 주장이나 입장을 공평, 대등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라. 취재원의 정보가 오보로 판명될 경우에도 책임은 전적으로 취재기자에게 있으므로 두 번, 세 번 확인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경찰의 발표도 공식적인 것인지 비공식적인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발표 이외의 담당경찰관으로부터의 개별적인 취재와 경찰조서에 의한 취재보도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자에게 있음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마. 다른 매체의 기사를 전재하여 오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언론사측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바. 공권력을 가진 기관에서 발표했거나 취재한 보도기사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이의가 있을 경우 언론측에서는 정부기관에서 발표했거나 취재한 것이니 믿을 수 밖에 없다고 취재원쪽을 두둔하는 경향이 있다. 언론의 가장 큰 사명중의 하나는 공권력 남용에 대한 감시기능이다. 피해자인 약자의 편에 서서 역추적하여 공권력의 남용으로 억울한 국민의 피해가 없었는지 규명하는 언론의 자세가 필요하다.

사. 공공의 이익에 필요하지 않는 한 인물사진을 함부로 게재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또한 게재되는 사진은 명확한 설명과 함께 기사내용과 관련되는 것이어야 한다.

아. 혐의단계에서 기왕에 보도된 사건에 대하여는 최종적인 확정판결 또는 사건의 최종 종결시까지 추적보도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한다.

자. 위헌판결이 난 사죄광고를 받아낼 수 없고 3심까지의 확정판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될 정정보도방법으로는 사실상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 법원의 고액손해배상판결과 위자료지불 판결이 필요하며 이는 언론의 인권침해보도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일부 학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액수가 소액으로 판결이 나고 있기 때문에 사죄광고는 현재와 같이 합헌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차. 자체심의제도를 강화하여 사전심의와 사후구제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심의기구를 편집국으로부터 명실공히 독립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의 유력신문사들이 운용하고 있는 옴부즈만(Ombudsman)제도와 '90년대 들어 시애틀 타임스지 등 미국의 수십개 신문사들이 채택하고 있는 "중재인 제도"의 도입을 권하고 싶다.

옴부즈만은 독자의 대표이며 독자의 대리인으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언론사의 간섭을 전혀받지 않는 외부인사를 계약방식으로 영입하여 피해자편에서 보도에 의한 분쟁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개별 신문사별로 운용하고 있는 「중재인 제도」는 언론사들이 독자의 불만을 법정밖에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대응방법으로 채택한 제도이다. 우선 신문사는 자사신문 판매지역내 유명인사를 복수로 「중재인」으로 위촉하고 그 명단을 작성하는데 「중재인」은 그 지방에서 공정하고 성실하고 청렴결백한 덕망있는 인사로 위촉하게 된다. 「중재인」명단이 작성되고 그 밖의 준비가 끝나면 지면을 통해 반복해서 소개한다. 피해자의 불만이 들어오면 편집간부는 이를 「중재인」전담기자에게 넘긴다. 당해 사건의 「중재인」은 복수의 「중재인」중에서 피해자와 전담기자가 합의해서 선임한다. 「중재인」은 5일 이내에 양쪽의 의견을 문서로 받고 청문회를 연다. 청문회에는 변호사의 출석도 가능하다.

- 서울대 법대, 일본 동경대대학원 신문학과 수료
- 부산일보 서울지사 취재부장, 서울신문 부국장겸 북한부장 · 외신부장,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한국언론연구원 원장
- 현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